

	편입학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4-18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19. 08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입학시기) 편입학 시기는 매년 1~2월경에 실시한다.

제3조(편입학정원) 편입학정원은 전적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인원 만큼 선발한다.

제4조(지원자격) 편입학의 지원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① 2학년 일반편입학

가.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

나.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(32학점 이상 취득한 자)

다. 전문대학 자퇴후 자퇴한 학기를 포함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

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

마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3학년 학사편입학

가.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

나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자

다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5조(선발방법) 당해년도 모집요강에 공고한 것에 따른다.

제6조(학점인정) ① 학점인정은 본 대학에서 정한 해당학년의 수료학점만 인정한다.

②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학점이수) ①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학점인정 학점 이외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편입학생은 편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
제8조(임상실습) 1, 2학년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3, 4학년의 임상실습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편입학한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으며,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.

제10조(편입생 학번부여) 편입생의 학번은 편입학 학년 재학생의 입학연도로 하며, 연번은 기존학번 연번의 다음부터 부여한다.

	편입학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4-18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19. 08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1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